

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

제정 2015. 5. 26. 국립국어원예규 제118호
일부개정 2016. 11. 9. 국립국어원예규 제13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1. '한국수어'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·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. [일부개정 2016.11.09]
2. '농인'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 [일부개정 2016.11.09]

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'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'(이하 '위원회'라 한다.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.
- ③ 위촉 위원은 수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(이하 '원장'이라 한다.)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.

1.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
2.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
3. 한국농아인협회장

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1. 농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
2. 수화통역학 등 수화 관련 학과, 언어학, 국어학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
3. 수화통역사 또는 농통역사
4. 수어 강사 경력자
5. 농학교 교사
6.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.

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
2. 사망, 질병, 장기 여행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⑨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.

1.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한국수어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
3. 분야별 전문용어 수어 제정 및 사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

제5조(운영)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단, 서면 운영을

할 경우 수어 영상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④ 위원회 간사는 특수언어진흥과 소속 직원 1명과 수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직원 1명으로 구성하며,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, 회의록 작성(한글과 수어 영상)과 보관, 수어 사용 환경 조성,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나누어 준비하고 수행한다. [일부개정 2016.11.09]

⑤ 한국수어와 관련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회의 결과의 반영)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고 수어 관련 주요 단체에 알리며, 의결 사항은 국립국어원의 특수 언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
제7조(수당) 위촉 위원(간사, 연구원 포함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2015. 5. 26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 11. 9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